

한양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규약

2025. 6. 27. 제정

2025. 7. 10. 개정

2025. 7. 17.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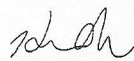
송기민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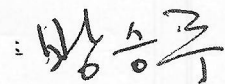
오현옥

부위원장



방승주

위원장



한양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한양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규약

2025. 6. 27. 제정

2025. 7. 10. 개정

2025. 7. 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한양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약칭은 한양교수노조, 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교권의 보호 및 신장과, 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학 운영의 투명화, 민주화, 합리화를 위한 활동
2. 교원의 고충처리 및 권익 보호 활동
3. 교원의 근로조건, 임금, 복지 등에 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4. 교원 간의 차별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5. 교원의 교육, 홍보, 문화활동 및 학제간 학술·연구 활동
6. 대학의 발전과 연구·개발(R&D)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7.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조(사무소)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둔다.

제5조(단체가입과 연대) 조합은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단체에 가입하거나 연대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인 교원

제6조(조합원인 교원 자격)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동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한양대학교 전임교원과 명예교원은 조합원(이하 ‘조합원인 교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재임용탈락 포함)된 교수도 조합원인 교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합원인 교원 중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교무위원급 보직자는 당해 보직 기간 중 조합원인 교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조합가입과 탈퇴) ① 조합원인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본 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원인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인 교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8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인 교원은 본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인 교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노동조합의 정관 및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
3. 조합비 및 기타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9조(조합원인 교원의 피해구제) 조합원인 교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합 규정에 따라 조합원인 교원을 우선하여 구제한다.

제10조(포상 및 징계) ① 조합원인 교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과 규정,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조합 질서 문란 및 명예 손상 행위의 경우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조합원인 교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상벌위원회의 설치·운영, 징계의 양정 및 절차, 불복 및 재심 절차,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1조(기구)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 및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임집행위원회
4. 사무처

제2절 회의 및 의결

제12조(조합의 회의 방식) ① 조합의 회의를 위해서는 조합원인 교원이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표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이를 '대면회의'라 함).

②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나 혹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힘들 경우 위원장이 원격회의의 방식을 채택하거나 혹은 대면회의와 원격회의를 병행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에서 표결은 원칙적으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되 사안에 따라 기명·공개투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④ 원격회의에서 표결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다. 비밀투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이메일을 통한 표결로 하거나 혹은 블록체인에 의한 전자표결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원격회의와 원격표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총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 소집 당시의 조합원인 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

제1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되,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위원장 또는 대의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15조(소집과 회의)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조합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인 교원 또는 대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총회는 재적조합원인 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인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개정,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인 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인 교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대의원회

제17조(선출과 임기) ①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 대의원회를 두며, 조합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인 교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출하며, 선거의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제18조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인 교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제3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5. 규약 및 규정에 따라 대의원이 발의한 사항
6.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사항

제19조(소집과 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은 상임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대회 소집을 건의할 경우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

④ 위원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할 때 개최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조합 홈페이지 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 개정과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정기 대의원회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⑦ 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 및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0조(구성과 기능)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그 밖의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구성)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규정으로 정한 위원회 등 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의 부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절 위원회

제22조(위원회) ① 조합은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설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대학민주화추진위원회
2. 교권보호위원회
3. 단체교섭위원회
4. 차별개선위원회
5. 학술연구위원회
6. 연구·개발(R&D) 제도개선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상벌위원회
9. 대외협력위원회

④ 특별위원회로 교권침해와 대학행정의 비리 사례 등에 대한 백서발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처리 등에 관한 상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대학민주화추진위원회) ① 대학행정의 투명화·합리화·민주화 및 대학행정에 대한 교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하여 대학민주화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교권보호위원회) ① 조합원인 교원의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및 기타 직무와 관련된 조합원인 교원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처리 등에 관한 상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단체교섭위원회) ① 대학과 교수노조 간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위원회를 둔다.

② 단체교섭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차별개선위원회) ① 교원 간 차별적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차별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학술연구위원회) ①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노동 관련 법제의 연구와 학술회의 개최 등을 위하여 학술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연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연구·개발(R&D)제도개선위원회) ① 교원의 연구·개발(R&D) 환경 및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R&D)제도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개발(R&D)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약함)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② 선관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선관위 위원의 선출과 임기, 선관위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는 선관위의 권한에 속한다.

제30조 (상벌위원회) ① 조합원인 교원의 공로를 포상하고, 조합 활동 및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② 상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원인 교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인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
3. 조합 규약 및 제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중 상벌과 관련된 사항
4. 노동조합 활동에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한 포상 심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벌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대외협력위원회) ① 산업별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연대 혹은 협력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대외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백서발간위원회) ① 백서발간위원회는 학교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직을 당하거나 혹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 그 밖에 대학이 교수채용이나 연구비(R&D) 수주에 있어서 불법 행위나 현저하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사례에 대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대학행정의 투명화·합리화·민주화를 기하며 동시에 학문과 진리를 추구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자정작업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처리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사무처

제3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장은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② 사무처에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 상근 직원의 임면과 보수, 고용조건과 업무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사무총장의 직무).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② 사무총장은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조합재산을 관리·운영한다.

제4장 임원

제35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5인
3. 사무총장 1인
4. 상임집행위원
5. 감사 2인

제36조(위원장 선출)

①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 선출에 관한 상세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제반 사업과 업무를 통할하고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 및 대의원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으로서의 권한.
2. 단체교섭의 대표자로서 단체협약체결권.
3.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소집 및 회의 주재 권한.
4. 부위원장과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상근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나 결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사고 또는 결위 시에는 후임 위원장 선출 시까지 부위원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결위 시 총회는 6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3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임원선거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차기 임원선거 연도 2

월 말일까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대의원회는 그 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소추된 임원의 직무는 소추된 날로부터 정지된다.

③ 탄핵여부의 결정은 총회에서 한다. 탄핵은 총회 재적조합원인 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인 교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탄핵사유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해당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청문을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40조(재정운영의 원칙) ① 조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③ 조합의 재정 및 회계 상황은 매월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한다.

④ 감사는 6개월마다 조합의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경리 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인 교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인 교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⑥ 열람 요구 및 이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의 조합비, 기부금, 특별조합비,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42조 (조합비) ① 조합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비와 의무금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정액으로 정한다.

③ 조합비는 대학과의 협의 하에 조합원인 교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제43조(기금 및 정책개발비) 조합은 필요한 법령 개정과 부당한 탄압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감사의 선출과 권한)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적조합원인 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인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조합의 업무에 대한 감사
2. 조합의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 ③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등

제45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인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제46조(해산사유)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장 자문위원회

제48조(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 조합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원인 교원이 아니더라도 자문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위한 자문을 한다.

제9장 규약의 개정

제49조 ① 규약 개정안의 발의는 위원장과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이 규약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약개정안이 총회에 제출되면 위원장은 그로부터 30일간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공고한다.

④ 규약개정안은 총회 재적조합원인 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인 교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개정안은 위원장이 공고한다.

⑤ 개정된 규약은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본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의 발기인이나 조합창립준비위원 또는 조합창립에 찬성하여 조합원 가입의사를 표시한 교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초대 대의원 등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① 규약에서 정한 대의원, 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과 조합 및 모든 임원, 대의원, 자문위원 등의 임기는 2028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초대 위원장, 감사 선출에 대한 경과규정) 규약에서 정한 위원장과, 감사는 선출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한하여 창립총회에서 대면 및 온라인 참석 조합원인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초대 상임집행위원 선출에 대한 경과규정) 초대 상임집행위원은 조합원인 교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규약·규정의 해석) 본 규약과 부속 규정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및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일반 법해석의 원칙에 따른다.

제7조(조합원인 교원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구글폼 등을 통하여 창립총회 전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창립총회 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은 조합원인 교원 자격을 창립총회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정안 의결) 이 제정안은 재적조합원인 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인 교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정안의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①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설립신고를 위한 제정안의 개정안은 창립총회 당시의 제정안으로 간주하되 재적조합원인 교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개정된 날(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개정된 날(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